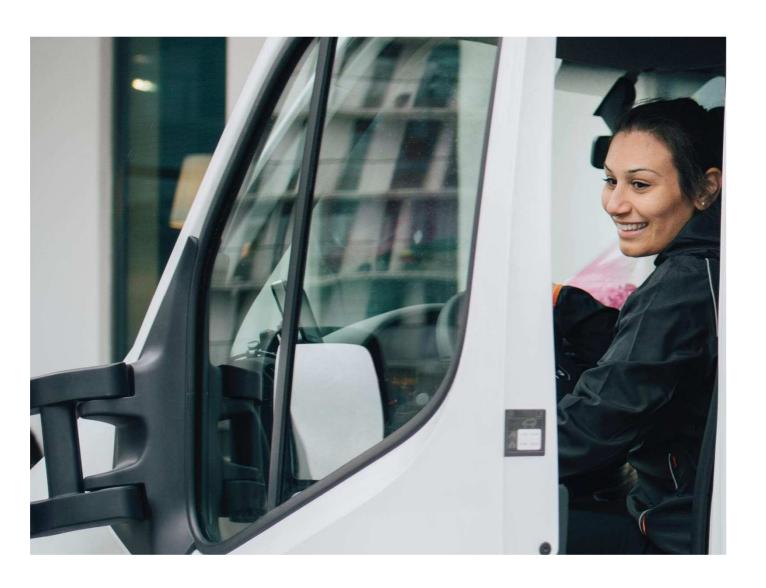


# 코로나**19** 유행 시 차량 이용 근로자의 안전 관리

사업자,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안전 지침 **2020**년 **8**월 **12**일





### 머리말

### '차량 이용 근로자'란?

차량 이용 근로자에는 택배기사, 여러 곳을 이동하여 일하는 근로자, 화물차 운전자, 현장 내 이동 차량과 업무 차 량 이용자 및 현장 인력, 그와 비슷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영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상태다. 고용자와 근로자, 자영업자, 고객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이다. 본 문서에는 현재와 같은 질병 대유행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동시에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된다)을 따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담겨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무를 지속하거나 재개할 때, 이 자료가 현실성 있는 틀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가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일하고 근로자와 방문객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강제로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와 방문객, 공중보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정부는 자원봉사를 재개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각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지침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근로자, 방문객과 동일하게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 받아야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 받아야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본 지침은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업계와 노동조합, 산업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고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 랜드 위임정부과 함께 영국 공중보건국(PHE), 영국 보건안전청(HSE) 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했다.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공중보건 관리는 각 지역에서 맡고 있으므로 본 지침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지역 공중보건 및 안전 요건, 법률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른 지역 소재 산업체도 북아일랜드 행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 웨일스 정부가 작성한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본 문서는 앞으로 업데이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버전은 2020년 8월 12자로 작성된 자료다. 업데이트는 https://www.gov.uk/working safe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safer.workplaces@beis.gov.uk로 보내기 바란다.

본 문서는 다양한 유형의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소개한 문서 중 하나로, 택배 기사와 이동 근로자, 화물차 운전자, 현장 내 이동 및 업무 차량, 현장 인력,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본 지침 사용법

본 문서에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이 나와 있다. 일터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각 업체는 본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장의 크기와 종류, 조직, 운영, 관리, 규제 방식 등 각자의 특성에 따라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조치가 방문객과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본 지침은 건강, 안전, 고용, 평등에 관한 모든 법적인 의무에 선행될수 없다. 사업장 또는 고용주는 보호 대상자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 기존의 의무 사항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본 지침은 강제성이 없으며, 그와 같은 기존 의무 사항을 준수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자사 근로자와 더불어 업무 대리 업체의 근로자, 도급업체 직원, 그밖에 사람들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적용 방법을 마련하기 바란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과 안전에 관한 다른 위험요소를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코로나19 위해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해평가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 목 차

머리말	4
'차량 이용 근로자'란?	4
본 지침 사용법	5
1. 위험성 확인	7
2. 출근 가능한 직원	12
3.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
4. 소비자, 방문객, 도급업체 관리	20
5. 업무 공간 청소	22
6. 개인보호장비(PPE)와 마스크	25
7. 인력 관리	29
8. 유입품과 유출품	33
추가 지침	34
부록	34



### 1. 위험성 확인

목적: 모든 사업장이 코로나19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모두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며, 특히 각 사업체는 근로자와 방문자에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와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맞닥뜨릴 위험을 생각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본 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코로나19 위험성 대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한편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주의 결정과 실행하고자 하는 통제 조치는 모두 안전에 새로운 문제가 되거나 현재의 위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저감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체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위해평가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이 아니며,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찾아내는 일이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는 위해평가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위해평가를 실시하면 필요한 일을 모두 완료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에서는 위해평가를 돕기 위한 인터랙티브 툴을 제공한다(https://www.hse.gov.uk/risk/assessment.htm).

고용주는 건강과 안전에 관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업무에 관한 근로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한편,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일터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경우 근로자와 개별적인 논의를 통해 일터에 코로나19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특히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때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면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고용주는 적절한 노동조합이 선정한 보건 및 안전 관련 대표자, 또는 그러한 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선정한 대표자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 대표를 직접 선정할 수는 없다.

이 과정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면,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협력과 신뢰, 공동 문제 해결이 바탕이 되는 조직문화가 형성된다. 일터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을 개발, 검토하는 과정은 다른 일반적인 업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고용주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문제에 항상 함께 대처해야 한다. 해결되지 않는 우려 사항은 아래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에게 연락한다
문제 제기 방법: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에 연락한다.
	아래 링크에 나온 HSE 양식을 작성한다: https://www.hse.gov.uk/contact/concerns.htm.
	HSE에 전화로 문의한다(0300 790 6787).



# 1. 위험성 확인(계속)

HSE나 지역 당국 등 법률 집행기관에서는 공중보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공중보건 법률과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용주를 찾아낸다. 해당 기관에는 업무 현장의 위험성 통제 수준이 개선되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건강 보호 규정(코로나바이러스, 제한)(영국)(No.3) 2020』에 따른 사업장 폐쇄도 그러한 조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고려한 위해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해평가는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건강 및 안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때 집행당국이 시행할 수 있는 조치에는 고용주가 요건으로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부터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명령서를 발부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집행 명령서가 발부된 후 심각한 위반 또는 미준수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특수한 의무와 조건 등 법률 집행 시스템이 보다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권고나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는 즉각 반응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다수의 고용주가 정부 및 각 지역 기구와 협력하여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영국이 벌이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참여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사자를 통한점검을 실시하여 각 고용주가 필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역별 새로운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고용주는 정부의 지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u>지역별 추가 제한조치에</u> 관한 정보는 본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1.1 위험 관리

**목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위험을 실효성 있는 최소 범위로 줄인다.

고용주는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업무 현장의 위험성을 실효성 있는 최저 수준으로 줄일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업무 현장을 이용하는 근로자, 또는 해당 공간을 공유하는 도급업체와 반드시 협력하여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의 관점에서 이는 아래 조치를 순서대로 실시하여 근로자와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근로자와 방문객 모두 몸이 좋지 않으면 집에 머물고 사업장에 오지 않도록 한다.
- · 모든 사업장에서 손을 자주 씻고 표면을 수시로 청소한다.
- · 사업장과 업무 현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8월 1일부터는 재택근무자 또는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전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그 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장에서 업무가 실시되는 경우,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켜지도록(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된다) 전원이 합당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코로나19 안전지침이 지켜지는 경우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도 일터로 복귀할수 있다. 단,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가 실시되어야 한다.
- · 특정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체는 2미터 간격을 유지하거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 추가적인 저감조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 손 씻기와 표면 청소 빈도를 더욱 늘린다.
  - · 해당 활동의 시행 시간을 최대한 짧게 줄인다.
  - · 사람들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스크린이나 가림 막을 마련한다.
  - · 가능하면 (정면을 바라보는 대신) 뒷면 또는 측면에서 작업을 실시 한다.
  - · '팀 구성이나 파트너 고정' 방식을 채택하여 개인별 접촉하는 사람 수를 줄인다(개개인이 몇 사람과만 업무를 하도록 한다).
- · 특정 활동을 재설계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활동이 사업체 운영을 지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 간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저감조치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 1.1 위험 관리 (계속)

- · 사람들이 서로 과도하게 큰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음악이나 방송을 틀면 소리를 지를 수 있으므로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 특히 일반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볼륨을 높여서 재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목소리를 높이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공기를 통한 전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러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 · 고정된 업무 파트너 외에 더 많은 사람과 지속적으로 대면 접촉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 · 평가 시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근로자가 있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 울여 확인해야 한다.

본 문서에서 제시하는 권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노동조합 등에서 세부 사업 분야에 맞게 마련된 권고 사항 이 있으면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이 운영 중인 경우, 일터의 코로나19 위험성에 관한 평가를 이미 실시했을 것이다. 해당 경우 본 문서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마련된 조치를 검토하여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건 아닌지, 업무 현장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험요소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 1.2 위해평가 결과 공유하기

위해평가 결과는 직원들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자사 웹 사이트에 결과를 공개한다(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했고 그 위험을 약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보여줄 것을 권장한다. 사업장 또는 업체 웹 사이트가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다. 각 사업장은 본 지침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래 통지문에 서명 후 사업장에 게시하기 바란다.

2020년 코로나19 안전 확보 우리 업체는 코로나19 위험 관리를 위한 정부 지침을 준수합니다.	
다 함께 안전한 일터 만들기 <b>5</b> 단계 수칙	
<ul><li>✓ 코로나19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공유했습니다.</li></ul>	
청소, 손 씻기, 위생 수칙에 관한 정부 지침을 준수	합니다.
<ul><li></li></ul>	할 수
일터에서 2m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두 마련하였습니다.	조치를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 1 m 간격을 유  ☑ 전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저감 조 마련했습니다.	-지하고 치를
고용주 서명 고용주 서명	
고용주 <u>고용주 성명</u> 날짜날짜	
연락처: 업체 건강 및 안전 업무 관리자 또는 보건안전청 <u>www.hse.gov.uk</u> , 0300 003 1647	



#### 목적:

고용주는 업무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업무는 특성상 많은 근로자가 멀리 이동하거나 집과 떨어진 곳에서 일하므로 재택근무가 어렵다.

바이러스를 통제하려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택근무는 이 목적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나, 코로나19 안전 지침이 철저히 지켜 진다면 확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 개개인의 출퇴근 거리와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보호가 필요한 특성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는지 상의해 야 한다.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더욱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사업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지역 교통에 발생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저 감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직원의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분산시키는 등). 고용주가 직원이 반드시 사업장으로 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코로 나19에 대비한 사업장 위해평가에 해당 판단을 반영하고 본 지침을 준수하여 확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업무 현장으로의 복귀 여부 는 반드시 근로자와 의미 있는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 단체가 있는 경우 이들을 통해 논의한다). 의미 있는 협의란 일터로 복귀 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터 복귀에 관하여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논의 내용에는 복귀 시점과 복귀 단계, 시행 중인 위험 저감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터로 돌아오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 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일터로 출근하도록 강요해 서는 안 된다.

- 현장에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정한다.
- 인력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단계적인 출근 재개 계획을 수립한다.
- 재택근무 중인 직원의 복지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다수가 현장에 출근하는 경우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한다.
- 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업무 시스템에 원격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2.1 고위험군 보호

목적: 감염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 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한다.

영국 공중보건국이 작성한 <u>보고서</u>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결과의 차이'에 따르면, 감염 위험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거나 감염 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 노년층 남성
-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사람
- 당뇨 등 질환자
- 흑인, 아시아인, 또는 소수민족(BAME) 출신 중 일부 그룹

고용주는 위해 평가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코로나19 안전 지침이 지켜지는 경우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도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 단,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가 실시되어야 한다.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이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여 출근하는 경우 가능하면 안전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이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은 임시로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근무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위험요소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보호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출 산 예정자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적절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적으로 극히 취 약한 사람과 함께 사는 직원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한다. 권고, 전화로 격려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 및 임상적으로 취약한 그룹에 관한
최신 지침을 참고한다.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근로자가 업무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업무를 맡기는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 2.2 자가격리자

목적: 현행 정부 지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받은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사람, 가족 또는 지원 버블 중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사람, 정부의 검사 및 추적 서비스에 따라 자가격리가 권고된 사람이 이러한 대상에 포함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u>고용주</u>와 <u>근로자</u>를 위해 마련된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중 급여 규정 관련 현행 지침을 확인한다.
- 고열, 기침이나 후각 상실 증상이 새로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경미한 수준이라도 반드시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최소 10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근로자는 검사일로부터 최소 10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본 요건은 7월 30일과 그 이후에 자가격리를 시작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증상이 나타난 사람,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에 관한 <u>현행 지침</u>을 확인한다.

목적: 차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고용주는 본 지침 적용 시 근로자와 개개인의 제각기 다른 상황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또는 민족과 같은 보호 특성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와 출산자 또는 출산 예정자를 각별히 챙겨야 할 책임이 있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각기 다른 보호 특성이 있는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고 려해야 한다.
- 보호 특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또는 현재 고려 중인 조치가 보호 특성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적절 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적절한 참여 를 독려하고 소통해야 한다.
- 평등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를 고려하여, 특별한 조치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부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실시하고, 출산자 또는 출산 예정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평가한다.
  - 조치를 마련할 때 특정 그룹에 다른 근로자보다 부당한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돌봐야 할 대상이 있 는 사람, 특정 종교인 등이 그러한 대상에 포함된다.

### 2.3 직장 내 평등



#### 목적:

가능하면 근로자가 일터에 도착할 때, 퇴근할 때, 근무 중일때, 현장 내에서 이동 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이 유지될 수있도록 한다.

- · 차량 내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을 항상따르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무거운물건 배송이나 반품 회수 등 1인 이상이 필요한 일이 많고 차량 내부 구조를 바꿔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 · 특정 업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2미터 간격을 유지하거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해저감 조치와 함께 1 미터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당 활동을 재설계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저감 조치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 해당 업무 시간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줄인다.
  - · 사람들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스크린이나 가림 막을 마련한다.
  - · 가능하면 (정면을 바라보는 대신) 뒷면 또는 측면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 · '팀 구성이나 파트너 고정' 방식을 채택하여 개인별 접촉하는 사람 수를 줄인다(개개인이 몇 사람과만 업무를 하도록 한다).
  - · 손 씻기, 표면 청소 빈도를 더 높인다.
- · 특정 업무를 재설계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체 운영을 지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 간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저감조치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 ·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과 더불어 입구 와 출구, 휴게 공간, 구내식당, 그와 비슷한 시설 등 사업장 내 모든 곳에 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 3.1 출퇴근

목적: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도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현장 도착 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일터로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분산시킨다. 이 때 보호 특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주차 공간을 추가하거나 사람들이 걷거나 달려서, 자전거로 출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 등의 시설을 추가한다.
- 통근용 미니버스 등 회사 차량에 동승하는 승객 수를 제한한다. 비 워두는 좌석을 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 단독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한 차량에 동승하는 팀 구성원을 고정 하다.
- 출퇴근에 관한 <u>정부 지침</u>을 확인한다.

목적: 작업 현장 내 이동 시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 3.2 건물과 작업 현장, 목적지로 이동

- 화물 터미널이나 물류 센터에서 동 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줄인다.
- 사람들로 붐비지 않도록 물품 수거 일정을 조정한다.
- 운반할 물품은 미리 수령하고 차량 적재 시 운전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 직무와 근무지 순환을 줄인다.
-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배송을 대신할 방안을 찾는다. 대형 물품은 일정보다 늦게 배송하거나 기계나 장비로 옮기는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인 1조로 배송해야 하나 근무 조를 고정시킬 수 없는 경우, 근로자 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한다.



# 3.3 차량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목적: 차량 내에서도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 ·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인승 차량은 피한다.
- · 가능하면 한 차량에 여러 사람이 동승하지 않는다.
- · 차량 내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고려한다.

한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차량 내부
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는다.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저감조치를 마련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확히 설명한 게시물을 설치한다.
· 주유 시 한 명이 담당하거나 비접촉 방식으로 실시한다.
· 시야를 가리는 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물
리적인 가림 막을 이용한다.
· 가능하면 마주보고 앉지 말고 옆으로 앉고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차량 내부 작업 등 서로 밀접한 거리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
우 팀 구성원을 고정시킨다.
창문을 열어두는 등 공기 순환율을 높여 차량 내부에 환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차량은 수시로 청소하고 특히 다른 사람이 쓰기 전에는 청소
를 실시한다.



### 3.4 배송 또는 수거

목적: 물류센터, 발송 구역 등과 같은 현장에 물품이 들어오거나 사업장에서 물품이 나갈 때, 특히 그 양이 많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표면을 통한 전파를 방지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가능하면 인파가 몰리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할 수 있도록 일 정을 조정한다.
- 물품을 가져가는 장소와 놓고 가는 장소를 게시물 등으로 표 시하고 전달 절차를 조정한다.
- 가능하고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적재와 하역을 한 사람이 담당하도록 한다.
- 입출입 보안 절차 시, 작업장, 창고에서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전자 사전 예약으로 이용 가능한 물 품은 비접촉 방식으로 배송한다.
- 서류 작업은 최대한 전자 문서로 대신하고 운송 서류 등 종 이 문서가 꼭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를 검토한다.
- 필요한 경우 다른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운전자가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에 해가 되거나 현행 안전 작업 수칙에 위배 되는 경우 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가급적 차를 운전해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차량에 머무르도록 한다.

#### 비접촉식 배송





# 3.5 사고, 보안, 그 밖에 사건

목적: 사고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 사고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거나 소방, 침입이 필 요한 상황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 · 비상 상황 시 다른 사람을 도운 경우, 상황 직후 손 씻기 등 위생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 사고 및 비상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이 최대 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코로나19로 운영 및 업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안에 발생하는 영향을 확인한다. 변경 후 새로운 보안상 위험요소가 생기거나 기존 위험요소가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른 저감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4.1 접촉 관리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방문 일정을 조정해서 사람 간 접촉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마주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화물 터미널에 도착하는 시각, 물품 수거 및 배송 시각, 휴식 시간 등을 조정한다.

배송 및 수령 확인은 비접촉 방식으로 실시하고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할 때 신체 접촉을 피한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 장소에 물품을 놓고 간다. 예를 들어 온라인 주문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찾아가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

차량 내 동승자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부 공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는다. 또한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하는 등 다른 추가 조치를 마련한다.

가능하면 모든 방문객의 방문 내역을 기록한다.

**목적**: 안전 유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4.2** 지침 제공 및 설명

차량 내부에서 탑승자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 수칙에 관한
지침과 설명을 제공한다. 청각이나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등 보
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특수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다.

여러 장소에서 물품을 수거, 배송하는 경우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사전에 협의한다.

운전자와 임시 근로자에게 수시로 지침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도 전달한다. 차량 내부에 지침을 비치하고 승객과 직원들이 지침과 수 칙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한다.

경찰과 직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마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승객에게 알린다.





# 5.1 업무 현장의 청결 유지

목적: 업무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오염된 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한다.

- 작업 공간과 장비는 다음 사용 전에 일반적인 청소용품으로 수시로 청소한다.
- 문손잡이, 연료 펌프, 차량 열쇠 등 접촉이 수시로 일어나는 물건과 표면은 자주 닦고 세척에 사용한 물건은 적절한 폐기 방안을 마련한다.
- 근로자들에게 차량 탑승 전 손 씻기를 권장한다.
- 근로자가 매번 물품 배송/전달 후에 손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차량에 손 소독제/손 닦는 물수건을 충분히 비치한다.
- 업무 종료 시 차량을 청소하고 폐기물과 소지품을 작업 공간 밖으로 제거한다.
- 창문과 문을 열어두는 등 환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접촉이 잦은 부분 닦기





# 5.2 위생 - 손 세척, 위생 시설, 화장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안내판과 포스터를 통해 손 씻기 요령과 손 씻기 빈도를 늘려야 한
	다는 점,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기침이나 재채기는 휴지에 대
	고 하거나 휴지가 없으면 팔에 대고 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운전자가 이동 중, 그리고 목적지에서 화장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 요건이 지켜지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도착 후
	확인서 접수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손 씻기가 불가능한 곳에는 손 소독제를 충분히 제공한다.
	쓰레기통을 늘리고 자주 비운다.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u>별도 지침</u> 을 반드시
	참고하여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문이 계속 열려있도록 고정해두는 등 내부에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한다.
	마스크와 개인보호장비(PPE)를 한 번 사용 후 폐기할 수 있는 일반

목적: 탈의실과 샤워실에서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한다.

# **5.3** 탈의실과 샤워실

쓰레기통을 여분으로 제공한다. 마스크와 개인보호장비(PPE)를 포함한 개인 폐기물이나 산업 폐기물 처리에 관한 <u>지침</u>을 확인해야

샤워실과 탈의실이 필요한 경우, 샤워실, 사물함, 탈의실의 청결한
사용과 청소 지침을 마련하여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개
인 물품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
기가 유지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업무 시간과 업무 종료 후 시설 전체의 주기적인 청소를 강화한다.





# 6. 개인보호장비 (PPE)와 마스크

PPE는 일터에서 건강과 안전상 위험요소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 안전 헬멧과 장갑, 보안경, 눈에 잘 띄는 의복, 안전 신발, 안전벨트, 차단/가림 막 등이 포함된다. 마스크와 같은 호흡기 보호 장비도 PPE에 해당한다.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위험요소로 인해 이미 업무 현장에서 PPE가 사용되는 경우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본 문서의 첫 부분에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 준수도 그러한 내용에 포함된다. PPE를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것 외에 추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업무 현장에서 보통 맞닥뜨리는 위험요소와는 종류가 다른 위험요소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 구성원이 고정된 팀 또는 파트너와의 업무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병원과 같은 임상시설이나 영국 공중보건청이 PPE 사용을 권장한 소수의 일부 사업체는 예외에 해당한다. 응급구조대원, 이민 업무 집행기관 직원 등이 그러한 예에 포함된다.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링크에 나온 권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covid-19-personal-protective-equipment-ppe-plan/covid-19-personalprotective-equipment-ppe-plan

및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decontamination-in-non-healthcare-settings/covid-19-decontamination-in-non-healthcare-settings.

임상시설이나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에 대응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업무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PPE를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니라면 PPE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위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해 평가로 PPE의 필요성이확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근로자에게 무료로 PPE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되는 모든 PPE는 근로자에게 잘 맞는 것이어야 한다.



## 6.1 마스크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착용자와 주변 사람을 코로나19 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

마스크는 매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착용할 수 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가리면 되고, 의료보건 분야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나 호흡기와 같은 안면 마스크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분진이나 살포물질 등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PPE와도 종류가 다르다. 의료보건 분야 근로자, 분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산업 현장 근로자 등 작업 현장에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시 안면 마스크를 포함한 PPE를 제공할 수 있도록충분한 재고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스크는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밀접한 거리에서 함께 일할 때 팀이나 파트너를 고정하는 것, 손 씻기와 표면 청소 빈도를 늘리는 것과 같은 다른 위험 관리 방안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계속해서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최상의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며, 고 용주는 마스크를 건강 및 안전 평가 시 위해관리 수단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그리고 일부 실내 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 으로 사용해야 한다.

평상시 잘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폐쇄된 공용 공간 이용 시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절히 착용하고 착용 전, 제거 전과 후에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

<u>마스크 착용 시점과 착용 장소에 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u>다.

일부 경우 <u>나이, 연령, 평등권 등의 사유</u>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도 된다.



# 6.1 마스크 (계속)

마스크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 · 마스크 착용 전, 벗기 전과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20초간 손을 철저히 씻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
- · 마스크 착용 시 얼굴이나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손에 있 던 세균으로 오염될 수 있다.
- · 마스크에 습기가 발생하거나 손으로 마스크를 만진 경우 교체할 것.
- · 손을 계속해서 자주 씻을 것.
- · 마스크는 매일 교체하고 세척할 것.
- · 세척 가능한 마스크는 제조사가 지시한 방법대로 세척할 것. 세척 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폐기물과 함께 조심해서 버릴 것.
- ·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지킬 것.

입술 움직임, 얼굴 표정,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시 이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7.1** 근무 형태와 감염 발생

7.1.1 근무 형태와 업무 그룹

**목적**: 개별 작업 그룹을 형성하고 근로자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바꾼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가능하면 근로자를 팀이나 교대 근무조로 나누거나 개별 업무를 할 당한다. 해당 팀이나 교대 조는 구성원을 고정하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한 사람과만 접촉하도록 한다.
- 같은 차량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은 가능한 구성원을 고정시킨다.
- 직접 전달이 필요한 경우를 파악하고(업무 정보, 여분의 부속, 샘플, 원자재 등), 놓고 가면 차후 수령하는 지점이나 전달 장소를 정하는 등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 일지를 21일간 임시 보관하고 검사 및 추적 서비스 요청 시 협조해야 한다. NHS 검사 및 추적국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염 클러스터와 발생 범위를 제 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u>상세 지침</u>이 마련되어 있다.

목적: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한다.

# **7.1** 근무 형태와 감염 발생

7.1.2 일터의 감염 발생

- 위해평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한 최신 계획을 마련해 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지역 공중보건 당국에 주도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단일 연락지점(SPOC) 역할을 할 담당자가 명시되어 야 한다.
-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지역 공중보건부 건강보호팀에 연락하여 의심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 <u>각</u> 지역 공중보건국 건강보호팀의 연락처를 참고하기 바란다.
- 지역 공중보건국 건강보호팀이 감염 발생을 최종 확인한 경우, 증상이 나타난 직원의 세부 기록 제출과 연락처 확인 요청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직원의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해당 경우 고용주에게는 감염 관리 절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토대로 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각 직원에게 연락하는 한편 예방 메시지를 강화하여 전달한다.



7.2 업무 관련 이동

7.2.1 숙소

**7.2** 업무 관련 이동

7.2.2 다른 장소로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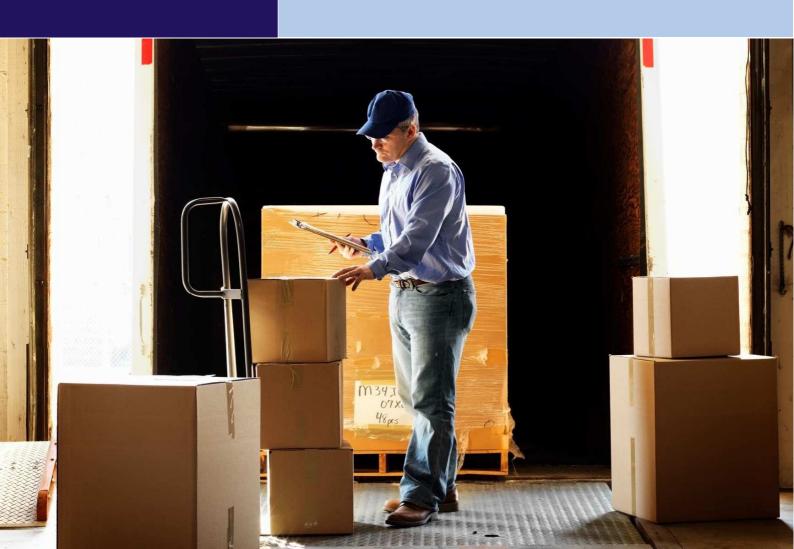
목적: 밤새 이동해야 하는 경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킨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가능하면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불가능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 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근로자가 집을 떠나 다른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숙박 내역을 통합해서 기록하고 모든 숙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켜지 도록 한다.

목적: 공장, 물류시설, 소비자가 있는 장소 등에 근로자가 물품을 배달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른 장소로 배송 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결제나 문서 교환 시 접촉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전자 결제를 이용하거나 전자 서명, 전자문서 교환 등을 활용한다.





목적: 모든 근로자가 코로나19 관련 안전 절차를 숙지하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업무 방식은 근로자의 이해를 돕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명확 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시로 전달한다.
- 업무 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면 기존에 마련된 소통 경로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 소통 방안과 교육 자료를 마련한다. 특히 새로 마련된 업무 절차가 있는 경우 이 점에 신경 쓴다.

### 7.3 소통과 교육

7.3.1 업무 복귀

# 7.3 소통과 교육

7.3.2 지속적인 소통과 게시물 활용



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리는 게시물

목적: 안전 조치의 시행 상황과 업데이트 여부를 모든 근로자가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업무 환경의 변화로 예기치 못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근로자 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파악하도록 한다(노동조합이 나 근로자 대표그룹 등도 포함).
- 불확실한 일들이 많은 시기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집 중적으로 노력한다. 정부가 발행한 <u>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u> 관련 정신건강 및 복지 지침을 참고하기 바란다.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 시각 장애 등 보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지침 내용은 이미지와 명확한 표현으로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달한다.
- 업무 일정 변경 등은 대면 소통 대신 화이트보드, 게시판 등 시각적 인 수단을 활용하여 알린다.
- 공급업체, 소비자, 업계 단체가 서로 경험을 채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 방식과 절차를 마련한다.



#### 목적:

물류 센터, 발송 구역 등과 같은 현장에 물품이 들어오거나 사업장에서 물품이 나갈 때, 특히 그 양이 많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표면을 통한 전파를 방지한다.

- 물품 수령 및 배송품 수거 지점, 절차, 게시판, 표지 방식을 개선한 다.
- 입출입 보안 절차 시, 작업장, 창고에서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전자 사전 예약으로 이용 가능한 물품은 비접촉 방식으로 배송한다.
- 가능하고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적재와 하역을 한 사람이 담당하도록 한다.
- 물품 적재 시 한 명 이상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고정된 구성원끼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다른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운전자가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에 해가 되거나 현행 안전 작업 수칙에 위배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가급적 차를 운전해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차량에 머무르도록 한다.